

「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- 노인복지법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군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